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정비창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순경 6명)을 증원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경찰 현장부서 훈련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담당관실을 교육 훈련담당관실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해양경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비기획단, 선박교통기술개발단 및 과학수사팀을 신설하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5명(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 정원 13명(경정1, 경감2, 경위2, 경사2, 경장1, 순경1, 5급1, 6급2, 7급1)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총경1, 경정2, 경감2, 경위2, 경사1, 경장1, 4급1, 5급2, 6급1)하며, 총액인건비제 예산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경사2, 경장2)을 감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담당관”을 “교육훈련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담당관”을 “교육훈련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찰교육원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의”로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해양경비기획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해양경비기획단을 둔다.

② 해양경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해양경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경비정보·상황인식 체계 구축에 대한 기획 및 조정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3.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공유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양경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4(선박교통기술개발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선박교통기술개발단을 둔다.

② 선박교통기술개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선박교통기술개발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음주운항, 과속, 항로이탈 등 해양사고 위험 탐지 시스템(이하 “음주운항 자동탐지시스템”이라 한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음주운항 자동탐지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3. 음주운항 자동탐지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과의 연동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사정보국에 수사과·형사과·정보과·외사과 및 과학수사팀을 두되, 수사과장·형사과장·정보과장 및 외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⑥ 과학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 범죄 감식 및 증거 분석

제34조제1항 단서 중 “19명(5급 1명, 6급 8명, 7급 7명, 9급 3명)”을 “20명(5급 1명, 6급 8명, 7급 8명, 9급 3명)”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단서 중 “14명(9급 14명)”을 “18명(7급 2명, 8급 2명, 9급 14명)”으로 한다.

별표 4의2 총 계 “500”을 “50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99”를 “500”으로 하며, 총경 “17”을 “18”로 하고, 경정 “50”을 “51”로 하며, 경사 “116”을 “115”로 하고, 순경 “19”를 “18”로 하며, 일반직 계 “108”을 “109”로 하고, 기술서기관 “2”를 “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2”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을 “9”로 하고,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 경위 1”를 삭제한다.

별표 7의2 경찰공무원 계 “10,134”를 “10,130”으로 하고, 경사 “1,919”를 “1,917”로 하며, 경장 “2,890”을 “2,888”로 하고, 일반직 계 “863”을 “867”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

사 “164”를 “166”으로 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5”를 “157”로 한다.

별표 8 총 계 “215”를 “22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3”을 “4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양경비기획단 및 선박교통기술개발단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과학수사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양경비기획단장 및 선박교통기술개발단이 차장을 보좌하는 사항과 과학수사팀이 분장하는 사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양경비기획단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경비과장이, 선박교통기술개발단이 보좌하는 사항은 해상교통관제과장이, 과학수사팀이 분장하는 사무는 수사과장이 각각 담당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3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및 <u>교육담당관</u> 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인사담당관은 총경으로, <u>교육담당관</u> 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 ----- ----- <u>교육훈련담당관</u> ----- ----- ----- <u>교육훈련담당관</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u>교육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u>교육훈련담당관</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해양경찰교육원</u>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감독	6. <u>해양경찰교육원</u> 및 <u>지방해양경찰관서의</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신설>	제4조의3(해양경비기획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u>해양경비기획단</u> 을 둔다. ② <u>해양경비기획단</u> 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7급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별표 7의2의 정원 4명(7급 2명, 8급 2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감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4명(경사 2명, 경장 2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증원된 것으로 본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호의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4급 1명, 5급 2명 및 6급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1호의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5급 1명, 6급 2명 및 7급 1명으로 보며, 별표4의2 제1호의 경정 1명, 경감 1명 및 경위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1호의 경감 1명, 경위 1명 및 경사 1명으로 본다.

<신 설>

다.

③ 해양경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경비정보·상황인식 체계 구축에 대한 기획 및 조정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3.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공유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양경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4(선박교통기술개발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선박교통기술개발단을 둔다.

② 선박교통기술개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선박교통기술개발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음주운항, 과속, 항로이탈 등 해양사고 위험 탐지 시스템(이하 “음주운항 자동탐지시

제8조(수사정보국) ① 수사정보국에 수사과·형사과·정보과 및 외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범죄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7. (생략)
- ③ ~ ⑤ (생략)

<신 설>

스템”이라 한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음주운항 자동탐지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3. 음주운항 자동탐지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과의 연동에 관한 사항

제8조(수사정보국) ① 수사정보국에 수사과·형사과·정보과·외사과 및 과학수사팀을 두되, 수사과장·형사과장·정보과장 및 외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과학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 범죄 감식 및 증거 분석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19명(5급 1명, 6급 8명, 7급 7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20명(5급 1명, 6급 8명, 7급 8명, 9급 3명)-----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④ ----- ----- ----- ----- ----- ----- -----

7의2의 정원 중 14명(9급 1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⑥ (생략)	----- 18명(7급 2명, 8급 2명, 9급 14명)----- ⑤·⑥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의2]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00	501	+1
1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99	500	+1
·	·	·	
·	·	·	
총경	17	18	+1
경정	50	51	+1
·	·	·	
·	·	·	
경사	116	115	-1
·	·	·	
순경	19	18	-1
일반직 계	108	109	+1
·	·	·	
·	·	·	
기술서기관	2	3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 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해양수산연구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2	+1
·	·	·	
·	·	·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 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 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 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 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	9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 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 재안전주사·전산주사·해양수 산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u>1</u> · ·	<u><폐 지></u> · ·	-1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 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 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 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 보·방송통신주사보·학예연구 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보건연구사·경위 · ·	<u>1</u> · ·	<u><폐 지></u> · ·	-1

[별표 7의2]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경찰공무원 계	· · <u>10,134</u>	· · <u>10,130</u>	-4
· · 경사	· · <u>1,919</u>	· · <u>1,917</u>	-2
경장	<u>2,890</u>	<u>2,888</u>	-2
· 일반직 계	· <u>863</u>	· <u>867</u>	+4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 수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 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 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 · <u>164</u>	· · <u>166</u>	+2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 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 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55</u>	<u>157</u>	+2
·	·	·	
·	·	·	

[별표 8]

해양경찰정비창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15</u>	<u>221</u>	+6
경찰공무원 계	<u>43</u>	<u>49</u>	+6
·	·	·	
·	·	·	